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8나20701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채원기

변론 종결 2020. 4. 9.

판결 선고 2020. 5. 19.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13. 선고 2014가합209537 판 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23,680원과 이 돈 중 34,247,680원에 대하여는 1991. 1.

1.부터,25,276,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각 2018.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84,600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 제출의 서증인 갑 제19부터 35호증, 을나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피고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II.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생활폐기물 매립 주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주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주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지방운전원으로 1981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재직했던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에는 "재직기간 중 1990년대 안성군 K 일대 하천부지에 안성군에서 수거된 생활쓰레기 등을 청소 차량으로 운반, 매립했다"는 기재가 있다. 이 사실확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충분한 증명은 없다.

그리고 1949. 7. 4.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출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했고, 1961. 9. 1. 법률제707호로 제정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군"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5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장, 읍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1988. 5. 1.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됐지만, 그지방자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안성군 G은 제정지방자치법의 시행 전부터 설치되었고, 안성군은 1997. 12. 7. 법률 제5458호로 안성시로 승격했다.

또한, 별지 기재 관련 법령에 의하면, 1990년 전후로 안성군 안에서 배출·집적된 일반폐기물인 생활폐기물은 안성군수가 수집·처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사정 등에,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피고가 생활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등의 동의나 추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M(원고의 모친)나 원고(이하 '원고 측'이라 통칭한다)의 동의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매립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원고 측의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모친 소유이었다가 원고가 상속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원고 측과의 계약이나 수용 등을 통해 취득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그러한 관련 문서를 보관·관리하는 것은 피고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92㎡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지중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던 당시에 원고 측의 동의를 받았거나 사후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추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할 만한 계약서, 공문서, 토지수용 관련 문서 등 그 무렵 작성의 처분문서나 공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동의를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원고가 아닌 제3자와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로써 확인되었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도 원고 측의 동의나 추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법원이 인정하게 하는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을 했다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측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중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했고 사후 추인을 받지도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항소심에서 지방재정법 상의 소멸시효 항변 외에 추가로, 원고 측에서 생활폐기물 매립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4.17.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수용재결) 감정평가액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수용재결을 한 때에 비로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4. 11. 1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점유시효취득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자신 소유 토지로 인식하고 그곳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갑 제6, 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1. 11. 25.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매립 사실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가, 2013. 1. 23. "G 지역의 생활폐기물 일부가 개인 사유지에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당시 G에서는 긴급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지중뿐 아니라 지상까지 공연하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각 회신은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 측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거에 의해 구분되고 국가 소유 하천과 인접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과 원고의 손해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통상 임료의 입체이용 손해율 상당액이 아니라 통상 임료 상당액 자체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중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중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상임료에 지중 공간에 대한 입체이용의 제한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인 입체이용 손해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III.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오, 판사 박성윤, 판사 이의영

관련 법령

■ 구 오물청소법(1982. 4. 2. 법률 제3554호로 전부개정된 것, 1982. 10. 3. 시행)

제4조(특별청소지역) ①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시장·군수는 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집적된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고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 ①시장·군수는 특별청소지역안에서 배출·집적된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특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폐고무·폐합성수지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끝-